

● 제26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2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박마루 의원 발의 】

의안번호 1190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안자 : 박마루 의원 발의(찬성자 10명)

나. 제안일 : 2016. 5. 25.

다. 회부일 : 2016. 5.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에 대해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안 제9조제 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치매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광역치매센터장의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하여,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광역치매센터의 조직 관리 및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례개정의 필요성

-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으로 인해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서울시 치매노인인구 추정치>

구분	2008	2014	2015	2020	2030
서울시 전체인구	10,456,034	10,386,339	10,022,181	9,895,548	9,414,828
65세이상 노인인구 (서울시인구 대비%)	890,052 8.5%	1,210,141 11.7%	1,262,436 12.6%	1,470,507 14.9%	2,102,329 22.3%
치매노인인구 (노인인구 대비 %)	74,764 8.4%	115,932 9.6%	123,719 9.8%	152,933 10.4%	210,233 10.0%

자료 :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3년

출처 : 「2016년 서울시광역치매센터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2016년

- 2015년 기준 서울시 치매환자수는 약 123,719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서울시 전체 어르신 인구의 약 9.8%로 어르신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여 2020년 약 15만명, 2030년 약 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치매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단순한 시설보호뿐만 아니라 치매 인식개선,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 단계별 적정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치매통합관리’를 위해 「치매관리법」 제16조에2에 따라 서울시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조례안에서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핵심 추진체계인 광역치매센터 장의 상근근무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센터장의 주 2회 비상근 근무로 인해 센터운영 및 직원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던 것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2 주요사항 검토

- 센터장의 근무형태에 대한 규정(안 제9조제2항)
 - 안 제9조제2항에서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 이는 광역치매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광역치매센터 운영지침이 수록된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센터장의 근무기준은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기준은 센터장의 비상근 근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상근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 및 광역자살예방센터장의 상근근무를 규정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역시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 센터장의 근무형태에 대해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비상근 근무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던 것과 비교하면 광역치매센터장의 근무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 역시 상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광역치매센터는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핵심 기관으로써 사업 실행기구에 해당하는 25개 지역치매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을 중견 대학교수급의 의사들이 맡고 있어 리더로서 이들을 이끌어가야하는 광역치매센터장은 치매 관련 전문의 중 많은 경험과 자질, 학식을 갖춘 사람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현 광역치매센터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광역치매센터장의 인건비 지급기준인 최대 월 536만 5천원으로 지역치매지원센터장 수준인 대학교수급의 의사를 상근 광역치매센터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